

# 의안 검토 보고

의안 번호	제132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2000. 1. 11.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재근		

## 1. 검토내용

### 가. 제안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99. 8. 9)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대행구역이 지정되어있어 사실상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체간의 대행구역 구분을 폐지하고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 건물의 대형화로 지하2층이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청소에는 가압펌프의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압펌프사용에 따른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할증요금을 적용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조항을 폐지코자 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 대행업체간 관내 전구역 자유경쟁 조항 신설(안 제10조)
-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조항을 수정(안 제10조제3항)
-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한다”조항을 삽입 및 수정(안 제10조제4항)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조항을 수정(안 제10조5항)

- 지하2층이상 가압펌프를 사용하여 정화조 청소시 지하활증수수료 조항 신설(안 제11조제4항)
- 과태료부과 기준조항을 수정 및 삭제(안 제10조제1항, 제2항)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및 제58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2.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우리구의 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업체의 대행구역제를 폐지하여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는등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로는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99. 8. 9)으로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59조제1항이 삭제 또는 개정되어 관련조례조문개정(안 조례 제3조제1항)
- 과태료부과 균거조항인 동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중 누락된 제2항을 조례에 추가 삽입함.(안 제4조제2항)
- 서초구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허가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대행업체의 대행구역을 폐지하고 자유경쟁체제로 전환(안 제10조제2항)
- 대행기간을 3년으로 하되 상황변경의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할수 있도록 하고, 대행구역은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도록 함. (안 제10조제4항)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중 지하2층이상 가압펌프 사용할 때 정화조 청소요금의 5%를 지하활증료로 가산 징수하도록 신설함.(안 제11조제4항)
- 동법시행규칙에서 삭제된 규칙 제79조를 조례에서 삭제함. (안 제17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에서 삭제된 규칙 제18조를 삭제하고, 법 제4조의 2를 법 제14조의 2로 수정(안 제18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35조와 중복된 조항을 정비함.(안 제20조)
- 별표2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부과 기준중 정화조 지하활증 청소요금이 신설된 것임.
- 별표3은 분뇨가가수집운반업이 동법 및 시행령에 균무규정이 없으며, 우리나라에 해당사업소가 없으므로 삭제
- 별표4는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 과태료부과금액 별표8('99. 8. 6 신설)과 중복으로 삭제됨.

####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96. 3. 28. 조례 전문을 개정한 이후 '97. 3. 7에 개정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99. 6. 7. 의안번호 '99. 10. 12. 조례 제436호로 개정안이 접수되어 심의의결후 제78호로 개정안이 접수되어 심의의결후로 공포된바 있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차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99. 8. 6.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중복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며,

- 서초구 관내 분뇨 수집·운반등의 대행업체에 대하여 관악구와 같이 구역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원 불친절, 청소지연, 수거료시비등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며,
-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지하2층에 대한 할증료를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가 관계 법령과의 불합리한 내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 제10조 제2항 중 “별표1”을 “동법시행령 별표6”으로 수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중복된 별표1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임.
-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독촉장 양식)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 3.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35조, 제58조
-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 제35조
-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59조, 제80조, 제112조

#### 분뇨등 관련자료 내역

- 업소현황
- 자치구별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수수료부과기준
- 분뇨 및 정화조오니 총 처리량 및 부담금 내역

# 〈관계법령〉

##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第14條의2** (污水處理施設등의 改善命令)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第1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竣工検査 결과 污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가 第9條第3項 또는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設置되었거나 同施設에서 排出되는放流水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을 施工한 者(施工者이破産·도망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污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 개선·대체·閉鎖 또는 施設의稼動狀態를 확인할 수 있는 器機의 設置등 필요한 措置(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污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가 第5條, 第9條第3項, 第10條第3項 및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污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에 污水를流入시키지 아니하고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設置한 경우에는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에 대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를 받은 者가 施設의 개선등을 이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改善命令를 받은 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등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2.8)

- 第18條 (糞尿處理業務)**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糞尿를 收集·運搬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等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②市·郡·區는 奧地·僻地등 糞尿의 收集·運搬 및 처리가 어려운 地域에 대하여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地域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改正 99·2·8>
- ③化粧室이 設置되어 있는 車輛·船舶 또는 航空機를 運行하는 者 및 移動式化粧室을 設置·관리하는 者는 그化粧室에서 排出되는 糞尿(水洗式化粧室에서 발생하는 污水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收集·運搬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收集·運搬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等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 ④市長·郡守·區廳長은 糞尿를 收集·運搬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市·道知事가 糞尿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경우에는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2·8>
- ⑤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糞尿處理施設을 設置하여 운영하는 者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集·運搬된 糞尿에 대하여 糞尿處理施設의 운영중단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97·3·7)

- 第19條 (糞尿의 처리)** ①第18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의 收集·運搬 및 처리의 기준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②糞尿를 收集·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糞尿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場所외의 場所에 糞尿를 함부로 버리거나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여 收集·運搬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5條 (糞尿等關聯營業) ①糞尿 또는 畜產廢水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나 污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清掃·관리 또는 污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清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의 運搬을業(이하 “糞尿等關聯營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許可 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糞尿等關聯營業의 業種區分과 营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糞尿等收集·運搬業

糞尿(污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清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제외한다)  
또는 畜產廢水(畜產廢水處理施設의 清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포함한다)  
를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거나 이를 모두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 2. 糞尿等處理業

糞尿處理施設 또는 畜產廢水處理施設을 갖추고 糞尿 또는 畜產廢水를 최종적으로 安全하게 처리하는 营業

#### 3. 淨化槽清掃業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污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清掃하고,  
污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清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营業

#### 4. 污水處理施設등管理業

污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또는 畜產廢水處理施設의 관리를 代行하는 营業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발생되는 污水·糞尿·畜產廢水를 효율적으로 收集·運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께 있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营業區域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變更許可 및 變更申告의 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商號 또는 姓名을 사용하여 糞尿等關聯營業을 하게 하거나 許可證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99·2·8)

第58條 (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다. <改正 99.2.8>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基準을 위반한 者
2. 第2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者로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畜產廢水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基準을 위반한 者
-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單獨淨化槽의 放流水水質基準을 위반한 者
  2.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土地의 出入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3. 第9條第2項 또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12條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查를 받지 아니하고 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또는 畜產廢水處理施設을 사용한 者
  5. 第13條·第13條의2第1項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汚水處理施設등의 設置 또는 변경을 당해 施設의 設計·施工業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에게 맡긴 者
  6. 第14條第2項 또는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또는 畜產廢水處理施設을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者
  7. 第14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營機構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8.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여 特定工產品을 사용한 者
  9.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0. 第24條의2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畜產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하여 사용한 者
  11. 第2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畜產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하여 사용한 者
  12. 第3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13. 第34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家畜을 飼育한 者
  14. 第35條第1項 또는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위로 變更申告를 한 者

15.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區域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者
16. 第3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料金을 받은 者
17. 第3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飲尿處理施設등의 設計·施工業者の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18. 第39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등製造業者の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19. 第39條의3第2項·第4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調查 또는 檢查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20. 第4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の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1.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技術管理人등의 教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22. 第4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記錄·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者
23. 第45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4.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3·12·27, 97·3·7>
-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异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异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12·27, 97·3·7>
-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异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93·12·27>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7조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에 관한 업종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99·8·6)

제27조의2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할 때 있어서 영업구역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량,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양, 분뇨·축산폐수 또는 오니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 보유현황, 분뇨·축산폐수·오니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등처리업 및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할 때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9·8·6)

제35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99·8·6>

④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99·8·6 대령16508>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분뇨등관련영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1년이내에 별표 6 또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별표 6〕(개정 99·8·6)

## 분뇨등 관리업의 허가기준(제27조관련)

## 1. 분뇨등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기술 능력
가. 사무실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차량 1대 이상 (용량의 합계 3천600리터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합한 면적이상)	

## 2. 분뇨등처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 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가.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또는 환경 기능사로서 당해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나.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1식이상	나. 화공기사(화공·공업화학분야) 1인 이상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당해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량 (4) 총질소 및 총인 (5) 대장균군수 (6)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7)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산소량	다. 기계기사(일반·정밀·건설·공정설계분야) 1인 이상

## 3. 정화조청소업

시설 및 장비	기술 능력
가. 사무실	가. 수질환경기사·위생사·환경기능사 중 1인 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 이상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차량 1대 이상 (용량의 합계가 특별기 지역은 3만리터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이상, 기타 지역은 3천600리터이상)	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합한 면적이상)	

## 4.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 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가.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 기술사 1인 이상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량 (3) 총질소 및 총인 (4) 대장균군수 (5)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나. 수질환경기사 2인 이상

- 비 고 : 1. 2개업종이상의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뇨등수집·운반업자가 분뇨와 축산폐수를 모두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이 다른 경우에는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한 차량과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기 위한 차량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3.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4.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수질관리기술사는 공학박사(환경공학·전공에 한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술사 1급자격을 취득한 후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으로 4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건설기술관리법 제 2조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7.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8 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흡인식차량·차고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흡인식차량·차고 및 실험기기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8) (신설 99·8·6)

과태료의 부과금액(제35조제3항 관련)

부과대상		과태료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가. 처리용량 1㎥/일이하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20	40	7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미만	30	50	8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미만	40	70	1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미만	50	80	12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70	100	150	
나. 처리용량 1㎥/일초과 5㎥/일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30	50	8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미만	40	70	1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미만	50	80	12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미만	70	100	15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150	200	300	
다. 처리용량 5㎥/일이상 10㎥/일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40	70	1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미만	50	80	12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미만	70	100	1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미만	100	150	220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라. 처리용량 10㎥/일이상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미만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미만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미만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200	300	400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경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가. 처리대상인원 10인 이하	20	40	70
나. 처리대상인원 10인초과 30인미만	30	50	80
다. 처리대상인원 30인 이상 50인미만	40	70	90
라. 처리대상인원 50인이상	50	80	100
3.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0	70	100
4.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40	50
5. 법 제12조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충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단독경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00	100	100
6. 법 제13조,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단독경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한 자	100	100	100

7.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가. 처리용량 1㎥이하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10인이하의 단독정화조	20	30	50	
나. 처리용량 1㎥초과, 5㎥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 10인초과, 30인미만의 단독정화조	30	50	8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와 축산폐수처리시설	50	70	100	
8.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9.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농산물을 사용한 자	50	70	100	
10.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1. 법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30	40	50	
12.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50	70	1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미만	70	100	1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미만	100	150	22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미만	200	300	400	
마.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0	400	500	
13.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50	50	50	
14.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15.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50	70	100	

16. 법 제35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100	100	100
1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00	100	100
18.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	100	100	100
19.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	100	100
20. 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세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	100	100
21. 법 제39조의3제2항,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	100	100
22.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2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24. 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50	70	100
25. 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40	50
26.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0	70	100

비 고 : 1.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차수계산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정한다.
3. 동일부지에 2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가 설치된 경우에는 모든 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을 합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기준이 되는 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을 정한다.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30조 (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기준) ①**법 제1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하수도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에 대하여는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5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제거여부 및 방류수의 상대등을 점검할 것

2. 1일 처리용량이 200세계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8 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3. 단독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 2 조의2제 1 호 내지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해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및 영 제 6 조의2제 3 항제 2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 및 외국인선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触업(과자접触업 및 다방영업을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 ②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8·9>

1. 단독정화조의 경우 수세기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와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공장폐수·빗물등을 유입시키는 행위

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살충제·살균제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

③ 삭제 <99·8·9>

**제59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99·8·9〉

1.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항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할 것
2.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등을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일지에 가동시간·축산폐수배출량·시설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매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3.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3월마다 1회이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6월마다 1회이상 각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다만,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대지 제79조 삭제 〈99·8·9〉**

**제80조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뇨등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뇨등처리업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화조정소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오수처리시설등관련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5, 99·8·9〉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99·8·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1조** (분뇨등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5, 99.8.9>

1. 삭제 <99.1.25>
  2.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변경
  3.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 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분뇨등처리업·정화조청소업 및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경우에 한 한다)의 변경

4. 대표자의 변경
5. 사무실 소자자의 변경

③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1. 제 1 항제 2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
2. 제 1 항제 3호의 경우 : 변경전

**제112조** (과태료의 징수율기) ①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환경부장관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분뇨등 관련 영업 현황

### 1. 영업의 종류 및 내용

#### 가. 분뇨등수집·운반업

- 분뇨(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제외) 또는 축산폐수(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를 포함)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나. 분뇨등 처리업

-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뇨를 화장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 다. 정화조 청소업

- 정화조 청소기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청소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라.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 2. 현황

(정화조 청소업 - 2개소, 분뇨등수집·운반업 - 1개소,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 2개소)

업종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담당구역	직원	비고
정화조 청소업	관악설업	양재동 1-26	장성채	-반포본, 2, 3, 8 -방배본, 1, 2, 3, 4동 -양재, 내곡, 반포700번지까지	18명  (사-5, 은진-7, 미화원-6)	
"	상덕설업	서초동 1338-2	임영신	-서초 1, 2, 3, 4동, 강원동 -반포1동 700-748번지 까지 -반포4동 40-62번지 까지	22명  (사-6, 은진-7, 미화원-8, 기능공-1)	
분뇨등수집· 운반업	세방정화	성수1가2동 668-100	임광재	서초구전지역 (세래식변소)	2명  (운진-1, 미화원-1)	
오수처리 시설등 관리업	(주)한성 환경개발	서초동 1338-21	박희종	전 국		
"	(주)삼우 환경컨설 타트	서초동 1364-42	왕규호	"		

## 자치구별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2000.1월 현재

(단위: 원)

구 분 자치구	분뇨·수집운반		정 화 조 청 소 수 수 료								비 고	
	부과기준	부과금액	기 본		초 과		야 간 할 증		지 하 할 증			
			부과기준	부과금액	부과기준	부과금액	부과기준	부과금액	부과기준	부과금액		
종로	18ℓ	226	0.75m <sup>3</sup>	17,680	0.1m <sup>3</sup> 당	1,170	청소요금	7.0%	청소요금	7.0%		
중구	"	230	"	17,680	"	1,160	"	"	"	5.0%		
용산	"	228	"	17,680	"	1,160	"	"	"	"		
성동	"	230	"	17,680	"	1,155	"	"	"	"		
광진	"	230	"	17,680	"	1,155	"	"	"	"		
동대문	"	230	"	17,680	"	1,160	"	"	청소요금	5.0%		
중랑	"	230	"	17,680	"	1,160	"	"	"	"		
성북	"	230	"	17,680	"	1,160	"	"	"	"		
강북	"	230	"	17,680	"	1,160	"	"	"	"		
도봉	"	230	"	17,680	"	1,160	"	"	"	"		
노원	"	230	"	17,680	"	1,160	"	"	"	"		
은평	"	218	"	16,840	"	1,100	"	"	"	"		
서대문	"	230	"	17,680	"	1,160	"	"	"	"		
마포	"	230	"	17,680	"	1,160	"	"	"	"		
양천	"	218	"	17,680	"	1,155	"	"	"	"		
강서	"	230	"	17,680	"	1,160	"	"	"	"		
구로	"	230	"	17,680	"	1,160	"	"	청소요금	5.0%		
금천	"	228	"	17,680	"	1,155	"	"	"	"		
영등포	10ℓ	128	"	17,680	100ℓ당	1,160	"	"	청소요금	5.0%		
동작	18ℓ	218	"	17,700	0.1m <sup>3</sup> 당	1,200	"	"	"	7.0%		
관악	"	218	"	16,840	"	1,100	"	"	"	"		
서초	"	218	"	16,840	"	1,100	"	"	"	"		
강남	"	218	"	16,840	"	1,100	"	"	청소요금	5.0%		
송파	"	218	"	18,520	"	1,265	"	"	"	7.0%		
강동	"	231	"	17,850	"	1,190	"	"	"	"		

○ 빙당의 대형화 및 고는 이동(침출(특수작업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견이 좋지 못하여 저자 양수 가압)펌프를 사용하게됨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총 처리량 및 부담금 내역

년도별	총처리량	부담금	비 고
1998년도	179,615. <sup>205</sup> kℓ	405,930,360원	kℓ당 2,260원
1999년도	186,162. <sup>070</sup> kℓ	420,726,280원	kℓ당 2,260원